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. 5. 16 선고 2018가단127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파산자 주식 회 사 유성티에 스아이 의 파산관재 인 B

변론 종결 2018. 4. 25

판결 선고 2018. 5. 16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대 298㎡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3. 5.14. 접수 제1859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,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, ① 원고는 피고와 대리점계약을

체결하고, 물품대금을 담보하기위하여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 한다)을 설정하여 준 사실, ② 원고는 2011년 이후 피고와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고 거래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를 모두 정산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.

판사 윤준석